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10. 01. 최초제정
 2021. 05. 01. 전면개정
 2021. 09. 01. 부분개정
 2023. 04. 01. 부분개정
 2023. 08. 01. 부분개정
 2025. 05.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 2, 「대전보건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38조에서 규정하는 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형태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실시간 원격수업”이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2. “비 실시간 원격수업”이란 교수자가 제작한 강의콘텐츠를 우리 대학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LMS라 한다)에 탑재 후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 시청하고 학습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말한다.
3. “재난대응 원격수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총장이 정책적으로 학기 전부 또는 일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
4. “학점교류 원격수업”이란 우리 대학과 교류대학으로 협약된 대학(이하 “교류대학”이라 한다.) 또는 우리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등의 연합체에서 개설한 원격수업을 말한다.
5. “군복무 학점인정 원격수업”이란 의무 군복무 휴학으로 인해 학업이 단절된 학생이 수강하는 원격수업을 말한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우리 대학 LMS 또는 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강의 콘텐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간·기말 시험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

③ “원격수업 병행교과목”이란 중간·기말 시험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원격수업 형태의 교수-학습 활동 비중이 70% 미만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말한다.

④ “강의콘텐츠”란 원격수업에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강의 교안 등을 말한다.

⑤ “콘텐츠 문서”란 콘텐츠를 구성하는 PPT, PDF, 아래한글, MS Word 등으로 구성된 문서를 말한다.

⑥“학점화 이러닝”이란 우리 대학의 교비지원에 의하여 제작·운영되는 원격수업 교과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우리 대학 학생이 수강하는 우리 대학 개설강좌의 원격수업 뿐만 아니라 다음의 각 호에도 적용한다.

1.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점 교류
2. 공동·복수학위 등 교육과정·교과목 공동 운영
3.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공동 운영

②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 원격수업에 대한 운영 기준은 교육부의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K-MOOC 강좌 개발·운영 가이드라인, 국내·외 대학 간 협약에 의한 온라인 강의 및 국내·외 대학 공동기관 등의 학점교류 과목운영 등 각각의 해당 원격수업 기준을 따른다.

제2장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개정 2025.05.01.>

제4조(설치 및 기능)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08.01., 2025.05.01.>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교무처장, 직업교육혁신센터장, 학생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9.01., 2023.04.01.>

②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직업교육혁신센터장, 교무팀장, 직업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 교수 그리고 총학생회 임원 3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09.01., 2025.05.01.>

③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운영 및 임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교육 계획 및 기획에 대한 사항
2. 원격교육 강좌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학점화 이러닝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원격수업 교과목의 운영

제7조(원격수업의 관리 및 운영) ①원격수업과 관련한 교과목의 분류 및 개설기준, 폐강 및 분반, 합반, 성적평가, 학사운영 등의 관리는 교무처 교무팀에서 주관하며, 기타사항은 우리 대학 학칙 및 시행세칙 등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08.01.>

②제1항에 정한 사항 이외의 원격수업을 위한 웹사이트의 관리, 콘텐츠 관리, LMS관리,

교수자의 교육 등의 원격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 직업교육혁신센터에서 주관한다.<개정 2021.09.01.>

제8조(수강신청) 원격수업 교과목 수강신청 절차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9조(이수가능학점) ①원격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총학점 미만으로 하며, 이수학점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 및 시행세칙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②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이수하고 이수증명서(수료증 등)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리 대학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1. 인정학점의 범위 : 이수 시간에 관계없이 1개 과정 당 1학점으로 함
2. 재학 중 취득 가능학점 : 학기당 1학점으로 제한하며, 재학 중 최대 2학점까지 인정함
3. 인정과목명의 표기 : K-MOOC에서 이수한 과정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정과목명에 K-MOOC를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음
4. 인정학점의 이수구분 : 교양선택으로 함
5. K-MOOC 인정 학점은 학칙 37조에서 정한 학기 중 이수학점에 포함함

③제2항에서 정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생은 이수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완료일 기준 1년을 초과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대학과 학점교류 및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의한 원격수업 학점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및 대학 간 협약에 따른다.

제10조(복수·공동학위) ①“교육부 훈령 제367호(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여 해외대학 및 국내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기타 공동(복수학위) 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리 대학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학습기간) ①1주 분량에 해당하는 비 실시간 원격수업 학습기간은 해당 차시가 속한 주의 해당일부부터 다음 차시 전날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학기 초 복학기간과 계절수업기간 일정을 감안하여 학습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3.08.01.>

제12조(수업시수 인정)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시간에 대한 교원의 시수인정 및 강사료 산정은 우리 대학의 강사료 지급규정을 따른다.

제13조(출석관리) ①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대면수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비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수강생의 LMS 로그인기록, 강의콘텐츠 재생시간 등을 확인 후 차시별 강의콘텐츠 분량의 80%이상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차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실시간 원격수업 및 비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전자출결(온라인 출석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과를 학생들에게 공개 한다.

제14조(성적평가) ①성적평가(중간시험, 기말시험 등)의 경우에는 실시간, 비실시간 원격수업 모두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비대면 평가로 대체할 수 있

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교육부 지정 대학 이러닝 지원 센터」로 지정된 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 복무 중 원격수업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4.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학점교류(공동학위)로 운영 시 해당 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5. 평생학습자반의 경우<신설 2023.08.01.>
6.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개정 2023.08.01.>

②원격형태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우리 대학 LMS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등 주의사항을 학습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강의평가) ①원격수업교과목은 매학기 2회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우리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 한다. 단, “재난대응 원격수업”교과목은 제외 한다.

②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 기준은 우리 대학 강의평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6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 ①원격수업을 위한 원활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위해 시설, 기자재, 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우리 대학의 학점화 이러닝 교과목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업교육혁신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절차·방법·기간·과목명·콘텐츠의 종류 등을 명시한 콘텐츠 개발 신청서를 직업교육혁신센터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09.01.>

제4장 원격수업 교과목 강의콘텐츠 제작·관리

제17조(강의콘텐츠의 구성) ①원격수업의 1차시의 콘텐츠는 최소 25분(1학점 기준)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토론, 프로젝트 기반 원격수업 및 HiT 특 등의 메신저를 이용한 양방향 수업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콘텐츠 재생시간을 25분 내외로 제작할 수 있다.

②1차시 총 학습시간은 50분(1학점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강의콘텐츠 제작 및 등록) ①원격수업을 위한 강의 콘텐츠는 담당교원이 직접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리 대학 팀티칭 교과목의 강의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할 경우, 타 대학 등과 협약을 통하여 강의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복수의 교원이 공동으로 제작 할 수 있다.

②콘텐츠는 문서 또는 동영상 또는 이미지(그림, 사진 등) 등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원격수업의 원활한 진행 및 관리(출석관리, 평가관리, 품질관리 등)를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③교수자는 우리 대학 LMS에 외부인의 강의 콘텐츠를 단순히 링크 등록(탑재)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교과목의 해당차시 강의 콘텐츠로 대체할 수 없다.

④비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교수자는 강의 콘텐츠를 매 수업시간 전까지 우리 대학 LMS에 등록(탑재)하여 학습자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비실시간 원격수업 교과목의 경우 교수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시각·청각 장애학생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하여 자막이나 스크립트 제공 등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⑥우리 대학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학점화 이러닝 교과목의 콘텐츠를 본교 원격수업 이외의 KOCW, KMOOC, 권역원격지원센터 등에 등재하고자 할 경우, 직업교육혁신센터를 경유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09.01.>

제19조(강의콘텐츠의 갱신의무)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위한 강의콘텐츠는 3년 이내에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3년이 경과된 콘텐츠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갱신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 수정 및 보완, 폐기 및 재제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외부콘텐츠 사용 및 인정기준) 외부콘텐츠 사용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콘텐츠제작 저작권 준수) 교수자가 제작한 강의콘텐츠는 지식 재산권 관련 법령 및 기타 유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교수자가 진다.

제22조(학습자의 준법의무)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교수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 영상이나 수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원격수업 중 교수자 또는 학습자의 이미지나 영상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행위 및 캡처한 이미지나 영상을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LMS 아이디,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 화상강의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 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제23조(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①원격수업의 교수자 및 학생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기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